

약 정 서

인천광역시 근로자 종합예술제 운영위원장(이하 “갑”)과 출품자(이하 “을”)은 종합예술제 출품 작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출품한 작품을 반입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전기간 작품의 분실, 파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갑”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기간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작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갑”이 임의 처분한다.

1.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3일 이내
2. 전시작품은 전시종료 후 2일 이내

제3조 “을”이 출품한 작품은 국내외의 미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하며, 개최요강 제9항 출품자격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사전 승낙없이 “을”의 작품을 복사 또는 촬영하여 홍보책자 등 발간물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입상 후 전시기간내에라도 제3조에 저촉이 되었을 경우 “갑”이 입상을 취소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갑” 제 회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예술제 운영위원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작 품 명 :

접수번호 :



접수시 유의사항

- ※ 사진·미술 부분 접수자는 약정서를 필히 작성할 것
- ※ 신청서에 반드시 소속사업장 대표의 확인을 받을 것
- ※ 연락처는 본인과 가장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확히 작성할 것